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7. 11. 24.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7. 11. 2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0차 건설교통위원회(97. 12. 16.) 상정, 질의, 토론
-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1차 건설교통위원회(97. 12. 17.)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환)

가. 제안이유

- 수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
-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기술지원 및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

나. 주요골자

- 설치대상
 - 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하여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 전항의 규정에서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라 함은 급수구경 75mm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의 대형건축물 및 시가 건설하는 공공시설
 - 시장이 시의 물공급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 요금감면
 - 시장은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가정용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65% 이하
 2. 업무용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50% 이하
 3. 영업용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10% 이하
 4. 공업용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65% 이하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중수도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 수도물의 재활용과 수돗물의 재활용을 통한 하수발생량을 줄여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 중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최소 10% ~ 최고 65%까지 감면혜택과 기술지원을 해 줄 수 있음
○ 가정용에 중수도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가능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 “별첨”참조

6.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가.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나. 수정안 대비표 1부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제335호
의결년월일	97. 12. 20. (제57회)

제출년월일 : 97. 12. 17.

제 출 자 : 건설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중수도 시설 설치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중수도 시설 설치의 파급효과를 도모하고
- 중수도 시설을 통한 수돗물의 재활용과 수돗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하수발생량을 줄여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사업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혜택 확대
 - 가정용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 이하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로
 - 업무용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 이하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로
 - 영업용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 이하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로
 - 공업용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 이하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로 수정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3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정용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2. 업무용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3. 영업용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
4. 공업용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요금감면) ①~②(생략)		제12조(요금감면) ①~②(제정안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중수도 사용		③		
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다음 각호				
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가정용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1. 가정용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의 65퍼센트 이하		의 65퍼센트		
2. 업무용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2. 업무용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의 50퍼센트 이하		의 50퍼센트		
3. 영업용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3. 영업용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의 10퍼센트 이하		의 10퍼센트		
4. 공업용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4. 공업용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의 65퍼센트 이하		의 65퍼센트		

[수정안포함]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기술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돗물”이라 함은 시장이 공급하는 원수 또는 정수를 말한다.
2.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3. “중수”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을 말한다.
4. “중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처리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5. “송·배수시설”이라 함은 중수를 중수처리시설로부터 이용설비까지 송·배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6. “이용설비”라 함은 저수조, 수세식변기, 샴수전 등 중수가 사용되는 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제2장 중수도설치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개별 및 지구순환방식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업용수의 이용방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업용수 사업관리자가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5조(설치대상) ①영 제15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라 함은 급수구경 75밀리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평방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 및 시가 건설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시장은 시의 물공급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 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중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소지한 자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 정화 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자

제7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관리인 등(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하여는 중수도 설치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자 등에게는 시장은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주 변경
4. 기타 관련사항

⑤기존 건축물에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до서를 제출받은 경우, 중수도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하여는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자 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⑧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시설사항 등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장 중수도의 관리

제8조(관리) ①중수도의 관리는 중수도를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사업자 등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등은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3. 이용설비에는 반드시 중수사용이란 표식을 설치한다.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한다.

③중수도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는 사업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 용수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수질기준)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등은 중수도의 수질을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질검사) ①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등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질검사의 횟수는 수소이온농도, 냄새,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에 대하여는 매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사용장소에 가장 가까운 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

④수질검사의 결과는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관계서류는 보관해 두어야 한다.

제4장 요금감면

제12조(요금감면) ①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사업자 등이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시장에게 중수도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도요금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가정용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2. 업무용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3. 영업용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

4. 공업용 :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④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중수사용량은 월간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수량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⑥시장은 매월 정례일을 정하여 수량 매타기에 기록된 사용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시 감면·조치하도록 한다.

⑦시장은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수량 인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수량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제14조(수량계량기 설치) ①수량계량기는 사업자 등이 설치하여야 하며 보수완료시는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자 등은 수량계량기가 파손 또는 고장이 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다.

제15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자 및 부정시설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부천시수도급수조례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중수도의 수질기준 (제10조 관련)

중수도의 용도 항 목	수세식 변소용수	살 수 용 수	조 경 용 수
대장균군	1ml당 10을 넘지 아니할 것	검출되지 아니할 것	검출되지 아니할 것
잔류염소	검출될 것	0.2ml/ℓ 이상일 것	—
외 관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탁 도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l/ℓ)	10을 넘지 아니할 것	10을 넘지 아니할 것	10을 넘지 아니할 것
냄 세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수소이온농도	pH5.8이상 8.5이하일 것	pH5.8이상 8.5이하일 것	pH5.8이상 8.5이하일 것

비 고 : 1. “살수용수”라 함은 도로청소작업·건설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 뿌리는 물로 이용되는 중수도를 말한다.

2. “조경용수”라 함은 주택단지 등의 인공연못·인공폭포·인공하천 및 분수 등에 이용하는 중수도를 말한다.

3. 공업용으로 쓰는 중수도에 대하여는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수도 사업개요서

부천시장 귀하

년 월 일

건축주 주소

성명

(인)

(전화)

—

중수도 설치에 따른 사업개요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건축장소	부천시 구 동 번지					
2. 시 공 자	주 소 성 명 (인) (전화)					
3. 건축물 명칭		5. 연면적	㎡			
4. 주요 용도		6. 급수관경	m/m			
7. 공사예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8. 중수 사용량	m³/d					
9. 원 수	종 별	오수, 잡배수, 기타	10. 중 수	용 도		
	수 량	오수		m³/d	시설용량	m³/d
		잡배수		m³/d	시설면적	㎡
		기타		m³/d	설치위치	지상 층·지하 층
11. 처리시설개요	처리시설의 공정구성을 기입 (첨부)					
※ 승인번호		※ 수입증지란		※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중수도 설치 확인서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중수도운용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년 월 일
 제출된 중수도 관련 도서의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중수도가 설치되었음을 확인합
 니다.

1. 건축물 명칭 및 주소	
2. 건축물 주소	
3. 중수도 사용계획서 승인번호	
4. 중수도 사업개요서 승인번호	

5. 중수도 시설현황

(별지 제4호 서식)

수도요금감면신청서				처리기간 7일
1. 신청인	주 소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2. 수도수전현황	수 용 가 호 변 호			
	구 경	m/m	업 종	
3. 중수사용현황	시 설 용 량	t(톤)	중 수도 설 치 년 월 일	
	원 수			
	사 용 용 도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